

요 약

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

◇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**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 비용의 일부 지원**

- **(운영 방식)** 정부·지자체·기업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의 점심 외식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**시범 사업 추진**(‘26~)
- **(지원 대상)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①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②근로자
- 산단 보유 및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고, **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 대상 지원**
- **(지출 방식)** 기업 여건에 따라 카드사 또는 디지털 식권업체 등 선택
- 카드사와 협약하여 청구할인, 캐시백, 포인트 지급 등으로 할인 제공
- **디지털 식권 업체***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현장 할인 방식 등 제공
* 근로자가 외식업체 등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·정산하는 플랫폼사
- **(지원 금액)**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**20% 할인** 지원
- 공휴일을 제외한 **주중(월~금) 11시~15시**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
-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**4만원***(국비 1 : 지방비 1 비율로 매칭)
* 1만원(1회 점심값) x 20일(월 근무일 수) x 20%(할인 비율) = 4만원
- **(사용처)** 외식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하여 「식품 위생법」 상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등 **외식업체에서 사용 가능**
- **(추진 체계)** 신청을 통해 운영 지자체 선정 후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지급
- **(예산 소요)** 지원금 50억(5만명(총 지원 대상자) x 40,000원(지원액) x 50% (국비 지원 비율) x 5개월) + 운영비 10억, 총 국비 60억 투입 계획
- **(추진 일정)** (1월) 시스템 개발 업체 공고, 사업 대상 지방정부 모집 및 관련 협회를 통한 사업 홍보 → (3월)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 → (4월) 사업 대상 지방정부 확정 및 결제사 선정 → (5월) 사업 개시

1. 시행 목적

-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의 20%를 지원하여 점심 외식비 부담 경감 및 외식경기 활성화

2. 지원 요건

- **(지원 대상)** 중소기업기본법 상 ①중소기업 중, ②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③근로자
 - ①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*
*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중인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대상자 확인 [붙임1]
 - ② (식대 지급 여부) 월급 명세서, 식대 계산서, 장부결제 영수증 등 식대 지급 증빙서류 확인
* 현재 식대 지급을 하지 않는 기업도 향후 사업시행과 함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(협약서 등 확인) [붙임1]
 - ③ (근로자) 고용계약서 및 근로자 인적 사항 등 확인 [붙임1]
- **(지원 제한)** 휴·폐업 중인 기업,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* 및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(* 아침밥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)
* 유흥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 사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[참고1]

3. 지원 금액 및 사용처

- **(지원 금액)** 외식업체중에서 결제한 금액의 20%, 1인당 월 한도 4만원*
* (예시) 1만원(1회 점심값) x 20일(월 근무일) x 20%(지원 비율) = 4만원
* 부정수급 방지(선결제, 점심 결제 후 저녁 회식 등)를 위해 일 한도 1만원 제한
- **(적용 시간)** 주중(월~금) 11시~15시 결제 건, 공휴일*은 불가
* 「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에 따른 공휴일
- **(사용처)** 유흥업소 및 구내식당을 제외한 **전 외식업체**

- 「식품위생법」 상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업 등
 - * 외식산업 활성화 목적 달성을 위해 급식업, 위탁 급식영업 등 구내식당 결제 시 할인 불가
 - * 유흥업소(유흥주점, 단란주점, 나이트클럽, 노래방 등)에서 결제 시 할인 불가
- 외식업종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업소*는 제외
 - * 백화점, 대형마트 입점 업체 등 외식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
 - ** 배달앱 온라인 결제 시 할인 불가(업체의 개별포스를 이용하는 결제의 경우 가능)
 - *** 외식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편의점은 제외

4. 지원 방식

- (지급 방식) 디지털 식권 업체 또는 카드사 중 기업이 1개의 방식을 선택하여 할인 제공
 - * 지원 방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 후 변경 불가
- 중소기업은 디지털 식권업체 또는 카드사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
 - (디지털 식권업체) 전 직원은 기업에서 선택한 디지털 식권업체를 통해 점심밥 지원을 받을 수 있음
 - (카드사) 직원 개인별로 카드사를 선택하여 발급 후 점심밥 지원을 받을 수 있음
 - * 법인카드는 지원 불가
- (사용 방법) 선택한 디지털 식권 또는 카드로 주중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 지원*
 - * 카드사 및 디지털 식권 업체는 결제 업종 및 결제 시간 구분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자동으로 할인 지원 가능
- 할인 지원방법은 디지털 식권사 또는 카드사에 따라 상이한 현장 할인을 제외하고, 청구할인은 결제일 출금액에서 할인 적용되며, 해당 월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 지급은 다음월 정산*
 - * (예시) 1.1~1.31 점심시간 외식업체 결제액에 대한 캐시백 → 다음달 지급

5. 지원 규모

- (지원 규모)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명
- (지원 기간) 8개월('26.5월~' 26.12월)
 - * 단, '26년 신규사업으로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,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협의 하에 지원 기간 단축 및 연장 가능(1~8개월 지원 선택)
- (지원 단가)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%(일 1만원, 월 4만원 한도)
- (소요 예산) 11,000백만원
 - (지원금) 10,000백만원 (*국비 : 지방비 = 1:1 매칭)
 - * 5만명×4만원×5개월×50%(국비) = 국비 5,000백만원
 - (운영 및 연구용역비) 1,000백만원*
 - *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700백만원 + 행정비용 100백만원
 - ** 사업성과분석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비용 200백만원

6. 사업추진 절차

- (시범지역 선정) 지방정부 신청을 통해 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및 예산 교부(농식품부)
- (사업 신청) 중소기업이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
 - 중소기업 확인서, 식대 지급 증빙서류^①, 근로계약서^② 등 근로자 인적 사항, 정부 지원금 지급방식^③ 등 제출
 - ① 급여명세서, 지출결의서, 식대지급 명세서, 사내 식대 지급 규정 등 직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/ ② 4대 보험 가입자 명부, 4대 보험 취득/상실신고서 사본 등 기업의 종사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 / ③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 포인트 등 지급방식 선택
- (지원사업 절차) ① (대상자 선정, 지자체) 중소기업 여부, 업종, 식대 지급 여부 등 검증 거쳐 기업 선정 → ② (사업비 교부, 지방정부 →

aT) 지방정부는 사업비(국비+지방비)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
 → ③ (대상자 통지, 지자체 → aT → 기업) 지자체에서 선정한 중소기업 및
 지원 대상자 명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에 통보(지자체 → aT) 및 기업에
 지원금 교부(aT→기업) → ④ (사업비 지급, aT → 카드사· 또는 디지털 식권업체)
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는 선정된 중소기업의 사업비 청구 내역을
 검증 후 사업비 지급

<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 절차 >

신청·접수	대상 검증	대상자 확정	혜택 지급
- 서류 제출 - 지원 방식 선택	- 업종, 개폐업, 근로 자수, 식대 제공 등 확인	- 지급 대상자 정보 제공	- 대상자 통보 - 선택한 방식으로 혜택 지급
중소기업→지자체	지자체	지자체→aT	aT→결제사
~4월	~4월	4~11월	5~12월

7. 기관별 역할

□ (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

- 지방정부의 기업 선정 적합 여부 확인 및 사업 규모 결정
- 사업 운영, 운영시스템 구축, 예산 집행(국비, 지방비), 사업 홍보

□ (지방정부)

- 사업 규모에 맞춰 지방비 마련 및 지원 대상 기업 신청 접수
- 지원신청 기업의 업종, 개·폐업 여부 및 식대지급 등 자격요건 확인
- 사업 기간 중 대상 기업의 천원의 아침밥 참여 여부*, 개·폐업, 식대 지급여부 및 직장인 퇴직 등 수시 점검
- * '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'과 중복추진 불가

□ (중소기업)

- 소속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법(카드·식권) 결정 및 신청
- 사업 기간 중 식대 지속 지급 및 규모 축소 금지, 지원 대상자의 퇴직, 기업의 업종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지방정부에 즉시 보고

10. 참여기업 준수사항

□ 근로자에게 점심값을 지원 해야함(미 지원 시 제외)

○ 단, 본 사업과 동시 점심값 지원을 진행할 기업은 사업 참여 가능

- * 급여명세서, 지출결의서, 식대지급 명세서, 사내 식대 지급 규정 등 직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□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점심값 지원 혜택이 시범사업 선정 이전보다 줄지 않아야함(축소 시 지원 제외)

- * 소관 지방정부는 점심값 지원여부 및 규모, 지원대상자 재직 여부 등 지속 확인

□ 사업신청 및 직원 변동사항 수시 통보

- * 미통보로 인해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(기업→aT)

11. 기타 사항

□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 제출,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점심값 할인 혜택에 대하여 환수조치

□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, 요청 기한(10일)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

□ 지급 방식을 선택한 이후 변경은 불가능(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)

참고 1

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

□ 용자제외 대상 업종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-11)	용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(42203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4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5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5 中	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-11)	용자제외 업종
사회보장 행정		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용자 제외

**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용자 제외

□ 용자제외 대상 업종 운용의 예외

- 사회적경제기업 : 보건업(86) 영위기업 지원 허용

*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

-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: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

- 호텔업(55101) 중 관광숙박업, 야영장업(55105),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(55109)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85614), 자동차 임대업(76110),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(91210), 기타 오락장 운영업(91229), 수상오락 서비스업(9123), 산업용 세탁업(96911), 세탁물공급업(96913)

참고 2

디지털 식권 업체 개요

- (개념)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임직원에게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일정 금액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식대를 지원
 - 외부 제휴업체(외식업체)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, 운영업체에 따라 온라인몰에서 식대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有
- (운영 방식) 디지털 식권 플랫폼에서 결제 후 기업에서 사후 정산하거나, 기업에서 선결제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
 - 제휴업체(외식업체) 결제 수수료는 2%로 내외로 신용카드 수수료 수준
- 디지털 식권 운영 기업 사례
 - (식권대장) 현대 벤디스에서 운영 중이며 외부 제휴업체(약 5만8천개소) 및 배달, 앱 내 식품관 이용 가능하며 약 4,800개 기업 사용 중
 - (페이코 식권) 외부 제휴업체(약 7만개소) 및 배달·픽업, 밀키트 이용이 가능하며 약 2,314개 기업에서 이용 중, 최초 도입 시 20만원의 수수료 발생
 - (식신e식권) 구내식당 및 외부 제휴업체(약 2만개소)에서 이용 가능하며, 약 880개 기업에서 사용 중이며, 월 이용료는 식대 금액에 따라 상이
 - 고객사의 60%가 서울·경기권에 위치하며 강원권은 0.4%에 불과
 - (비플 식권) 제로페이 가맹점(약 82만개소)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권으로 월 이용료는 인당 1,000원~2,000원

붙임1

사업 신청 관련 서류 [청서·적서표시는 수정 또는 삭제]

<서 식 1 : 사업 신청서>

기업명

수신자 각 관할 지방정부

(경 유)

제 목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신청서

1. 관련 : 00도/시/군/구청 농식품유통과-000(2025.00.00.)
 2. 위 호에 근거하여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참여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- 가. 사업개요

기업명	기업규모	신청 식수인원	국비 신청금액	결제형태
기업명	중소기업	000명	000원	카드/식권업체

붙임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신청서 1부. 끝

기업명 (직인)

시행: 기업명-20260000(202600.00)

주소: 000-000

전화: 000-000-0000 E-mail: 000@000

※ 해당 양식은 사업신청서 외 공문제출이 필요한 행정절차에 활용 가능(공문 양식 또는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기업은 자체 양식 활용)

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신청서

사 업 명		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		
기 업	기 업 명 (협의체명)	0000주식회사 (설립일자: 0000년 00월 00일)		
	산단명	ex) 0000국가산업단지		
	대 표 자 명			
	사업자등록번호	※ 단체형은 고유번호 기재		
	소재지 주소 (우편번호)			
	홈페이지주소	없으면 미기재		
	연 락 처			
기업 업무 담당자	성 명		직 위	
	전화번호		휴 대 폰	
	이 메 일		팩스번호	
신청 식수인원		총 0,000명 ※ 식수인원에 대해서는 월별 및 수시 점검		
식대 지급여부 (해당 사항 체크)		☐ 지급 ☐ 지급 예정 ☐ 미지급 ※ 지급하는 경우, [제출서류2] 자료 첨부 지급예정인 경우, 지급예정일 및 확인가능한 자료 첨부 미지급의 경우 사업 신청 불가		
운영기간		※ 원칙: 2026. 5-6월 ~ 9-10월 / 월~금 운영(휴무일 제외) ※ 운영기간은 협조 후 변동가능 (운영요일은 변동불가)		
결제형태 (해당 사항 체크)		☐ 카드사 ☐ 식권업체		
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「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」 사업에 대한 참여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 (*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업홍보·요청자료 등에 의해 외부에 제공될 수 있음) 2026. . . 대표자 : (인)(또는 서명) ※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필수 시 · 군 · 구 단체장 귀하				

“신청서 작성 시 서식에 설명된 사항(파란색)은 삭제하여야 합니다.(이하 타 서식 동일)”

[제출서류 2: 식대 제공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(공통)]

※ 월급 명세서, 식대 계산서, 장부결제 영수증 등 식대 지급 증빙서류 확인

(* 현재 식대 지급을 하지 않는 기업도 향후 사업시행과 함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(협약서 등 확인))

[제출서류 3: 중소기업 확인서(공통)]

[제출서류 4: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(공통)]

※ 중소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
고용계약서 및 근로자 인적 사항 첨부